

[상표분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성질표시 표장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7224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7. 2. 9./ 2017. 10. 11./ 제1291851호

2) 구 성 : **거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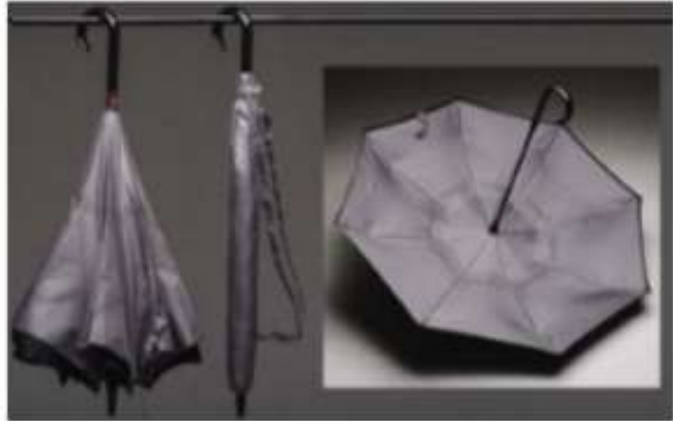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가방, 지갑, 스포츠용 가방, 트렁크 및 여행가방, 우산, 양산, 지팡이, 어린이보호용 안전끈,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없는 것),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가죽, 인조가죽, 우산 및 그 부품, 우산대, 우산손잡이, 우산커버, 파라솔, 우산 또는 양산용 살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거꾸로우산**

2) 사용상품 : 거꾸로 펴고 접는 우산

3) 사용자 : 피고



판결요지

으로 그 사용상품인 '거꾸로 펴고 접는 우산'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거꾸로 폼다 접는 용도,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가진 우산으로 직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확인대상표장은 같은 크기의 한글을 동일한 서체로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서 그 사용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용도, 효능,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변리사 24년/변호사 16년, 특허심판소송, 민형사소송, 손해배상, One-Stop Service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